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5171-14호(심의일: 2024.11.11)

(유효기간: 2024.11.13 ~ 2026.09.30)

[정액적립] [자유적립]

「KB 국민프리미엄적금」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명 및 특징

■ 상 품 명: KB국민프리미엄적금

■ 상품특징: 단체가입고객 또는 병역명문가 등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거래 조건 2

| 구 분 | 내 용 | | |
|----------------|---|---------|---------|
| 가입대상 | ■ 실명의 개인 (1 인 1 계좌) | | |
| 상품유형 | ■ 정액적립식/자유적립식 예금 | | |
| 거래방법 | ■ 신규: 영업점, 인터넷뱅킹, KB 스타뱅킹, 고객센터 ■ 해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KB 스타뱅킹, 고객센터 | | |
| 계약기간 | 12개월 이상 ~ 60개월 이하(월단위) | | |
| 가입금액 및 저축방법 | ■ 회차별 1 만원 이상 원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3 백만원 이내에서 저축 가능 ※ 자유적립식은 만기 1개월 전까지 저축 가능 | | |
| 이자지급시기 | ■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 |
| | ■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 | |
| 기본이율 | 계약기간 | 정액적립식 | 자유적립식 |
| (세금공제 전, | 12개월이상 ~ 24개월미만 | 연 2.50% | 연 2.30% |
| 2024.11.13 | 24개월이상 ~ 36개월미만 | 연 2.70% | 연 2.40% |
| 기준) | 36개월이상 ~ 60개월미만 | 연 2.80% | 연 2.70% |
| | 60개월 | 연 3.00% | 연 2.90% |
| | | |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우대이율
- ※ 만기해지하는 경우에만 해당 계약기간 동안 적용

| 계약기간 | 단체가입/나라사랑/쿠폰 | 교차거래 |
|-----------------|--------------|---------|
| 12개월이상 ~ 24개월미만 | 연 0.6% | |
| 24개월이상 ~ 36개월미만 | 연 0.7% | 연 0.3% |
| 36개월이상 ~ 60개월미만 | 연 0.9% | i 0.3 % |
| 60개월 | 연 1.0% | |

※ 단체가입, 나라사랑, 쿠폰 우대이율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우대이율 (세금공제 전, 2024.11.13 기준)

- [1] 단체가입 우대이율: 최초 신규일에 대상고객이 5인 이상 가입 시에만 적용(※ 영업점 신규 시 적용)
 - * 대상고객: 영업점에서 선정한 우대대상 업체(기관)^{주)} 소속 직원
 - 주)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임의단체번호 있는 임의단체 대상 (※ 계모임, 동호회 등 순수 개인모임은 제외)
- * 확인서류: 명함, 사원증, 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가입대상자 사업주확인서(별도 양식) 등

[2] 나라사랑 우대이율(※ 영업점 신규 시 적용)

- * 대상고객: 병역명문가, 현역군인, 입영대상자, 태권도 단(품)증 소지 고객
- * 확인서류: 병역명문가증, 장교/부사관 신분증, 부대장 확인서, 입영통지서, 국기원 발행 태권도 단(품)증 등

[3] 쿠폰우대 우대이율(※ 신규 시 적용)

- * 대상고객: 본부에서 선정하여 이메일을 통해 일괄 발송한 금리우대쿠폰을 소지한 고객
- * 적용방법: 쿠폰 유효기간(3개월) 내 신규 가입 가능

[4] 교차거래 우대이율

- * 대상고객: 신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에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계좌 또는 신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에 30만원 이상의 KB국민카드 매입실적이 있는 계좌
- 예) 2021년 9월에 가입한 경우 2021년 12월에 본인명의 계좌에 급여이체 실적이 있거나 30만원 이상의 KB국민카드 매입실적이 있으면 우대이율 적용
- ※ 급여이체실적 인정기준
 - KB국민은행과 급여이체 또는 대량이체계약에 따른 급여성 선일자, 탑라인, 프리미엄뱅킹등에 의한 이체실적
 -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을 보유하고 이 통장에서 인정하는 건별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
- ※ KB국민카드 매입실적은 KB국민카드 사용전표가 KB국민카드사로 매입된 경우 인정
- ※ KB국민카드 매입실적 산정 시 기업카드 및 가족카드, 선불카드 매입금액은 제외

최종이율 (세금공제 전, 2024.11.1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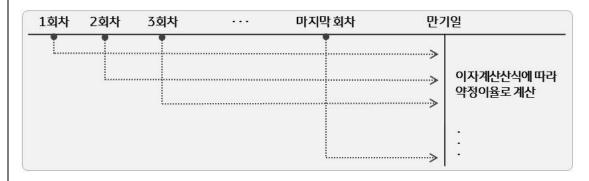
| 계약기간 | 정액적립식 | 자유적립식 |
|-----------------|-------------------------|-------------------------|
| 12개월이상 ~ 24개월미만 | 최저 연 2.50% ~ 최고 연 3.40% | 최저 연 2.30% ~ 최고 연 3.20% |
| 24개월이상 ~ 36개월미만 | 최저 연 2.70% ~ 최고 연 3.70% | 최저 연 2.40% ~ 최고 연 3.40% |
| 36개월이상 ~ 60개월미만 | 최저 연 2.80% ~ 최고 연 4.00% | 최저 연 2.70% ~ 최고 연 3.90% |
| 60개월 | 최저 연 3.00% ~ 최고 연 4.30% | 최저 연 2.90% ~ 최고 연 4.20% |

※ 최고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단체가입/나라사랑 /쿠폰우대 및 교차거래 우대이율 모두 적용할 경우

■ 자유적립식: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365

-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 정액적립식: {월저축금 × 계약월수 × (계약월수+1)/2} × (연이율/12)

만기이자 계산방법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단위: 연%)

중도해지이율 (세금공제 전, 2024.11.1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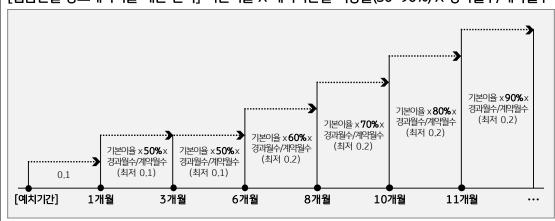
| 예치기간 | 이율 |
|-----------------|---------------------------------------|
| 1개월미만 | 0.1 |
| 1개월이상 ~ 3개월미만 | 기본이율 X 5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1) |
|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 기본이율 X 5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1) |
| 6개월이상 ~ 8개월미만 | 기본이율 X 6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2) |
| 8개월이상 ~ 10개월미만 | 기본이율 X 7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2) |
| 10개월이상 ~ 11개월미만 | 기본이율 X 8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2) |
| 11개월이상 | 기본이율 X 9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2) |

- 1. 경과월수: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1개월 미만은 절상
- 2. 계약월수: 신규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월 신규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 1개월미만은 절상 ※ 단, 계약기간이 월단위인 경우 계약월수를 그대로 사용하며,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 3.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입금건별 중도해지이율 계산 산식] 기본이율 X 예치기간별 적용률(50~90%) X 경과월수/계약월수

중도해지이자 계산방법 (산출근거)



|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 | |
|-----------------|---|---|--|
| 만기후이율 | 경과기간 | (단위: 연 %) 이율 | |
| (세금공제 전, | | 기본이율 X 50% | |
| 2024.11.13 | 만기후 1개월초과 ~ 3개월이내 | 기본이율 X 30% | |
| 기준) | 만기후 3개월초과 | 0.1 | |
| | ※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소수점 | 셋째 자리에서 절사) | |
| 세제혜택 |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 |
| 계약해지방법 | ■ 영업점, 인터넷뱅킹, KB 스타뱅킹,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가능 ※ 고객센터 통한 해지 시 만기해지만 가능하며 미성년자 예금 해지 불가 ※ 영업점에서 신규한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 ■ 만기 자동해지 가능 ※ 만기 자동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정계좌로 입금 가능 | | |
| 재예치 | ■ 불가 | | |
| 일부인출 | ■ 불가 | | |
| 만기앞당김 지급 | ■ 정액적립식: 가능 ■ 자유적립식: 불가 | | |
| 질권설정 | ■ 가능 | | |
| 양도 및 담보제공 | ■ 양도 가능 ■ 예금담보대출은 계좌잔액의 95%까지 가능 | | |
|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C |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주 2)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대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주 3) 질권설정: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차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참 | 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참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경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
| 자동이체 | ■ KB 국민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 휴면예금 및 출연 |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에 출연 ^{주)}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 |

| |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 |
|-------------|--|--|--|
| | 주)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 |
| |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사용하지 않는 소액계좌를 잔고 이전/해지 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 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
| 예금자 보호여부 | 해 당 이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1인당 최고 5천만원 | |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주1)} 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 ^{주2)} 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부담 없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1)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주2) 해지요구서: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 | |
| 자료열람요구권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 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
| 이용제한 사항 | ■ 이 상품은 공동 명의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 |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이 상품은 KB 국민은행 수신상품부(P)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9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kbstar.com),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